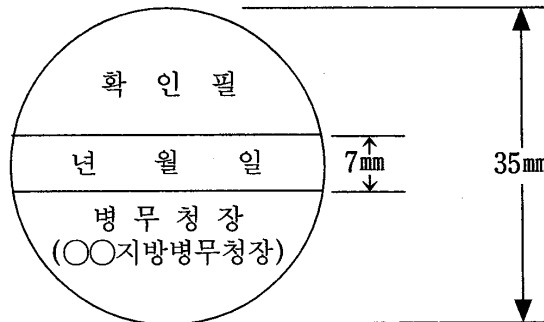


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 도] <개정 2008.10.8>

병역사항 확인필인(제8조관련)



※ 비 고 :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신고 내용의 확인·조사를 마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)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(별지 제3호서식)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(별지 제10호서식)의 여백에 위 확인필인을 찍는다.